

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민 대상 수어인구 확대를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2024년 12월 31일자로 협약 만료됨.('22.1.1.~'24.12.31.)
- 나. 서울시민 대상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어교육 운영으로 수어에 대한 이해 확대와 공인수어통역사 및 전문수어통역사 양성으로 농아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수어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, 농아인들의 자립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수행 필요.
- 다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
-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
 - 전문영역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
 -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
 -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시민 교육 등
- 나. 위탁범위 : 사무운영, 부동산,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
- 다. 위탁기간 : '25. 1. 1. ~ '27. 12. 31.(3년)

라. 운영개요

기관명	소재지	현 운영법인	총 위탁기간 (위탁횟수)	위탁기간 (위탁횟수)	위탁금 (백만원)
서울수어전문 교육원	서대문구 경기대로 15엘림넷 5층	한국농아인 협회 서울시협회	'09.4.13.~ '24.12.31. (7회)	'22.1.1.~ '24.12.31. (7회)	613('24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1조(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)
「한국수화언어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성준(☎2133-7641)